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43

발의연월일: 2021. 1. 8.

발 의 자:윤재옥・김희곤・김용판

최춘식 · 김승수 · 홍석준

곽상도 · 강대식 · 김상훈

정희용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사업자가임대료를 인하하여 받는 경우 인하액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2020년 12월 8일부터 3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, 비수도권 2단계가 2021년 1월 17일까지 2주 연장되 는 등 연일 계속된 고강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.

이에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50%에서 75%로 확대하고, 임차인의 사업장이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

0%를 공제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. 또한 코로나19백신 접종 시기를 고려해 세액공제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(안 제96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6조의3제1항 중 "2021년 6월 30일"을 "2021년 9월 30일"로, "100분의 50"을 "100분의 75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제기간 중 임차인의 사업장(해당 상가건물의 사업장에 한정한다)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조치 기간이 속하는 달에 한정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 례)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 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96조의3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제96조의3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(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 정한다)으로부터 2020년 1월 1 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-----2021년 9월 30일-(이하 이 조에서 "공제기간"이 라 한다)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-----100분의 75--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<단서 다만, 공제기간 중 임차인의 사업장 신설> (해당 상가건물의 사업장에 한 정한다)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 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조치 기간이 속하는 달에 한정하여 임대료 인하액의

	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
	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
	<u>다.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